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9. 16.(목) / 총 7매(본문6)	
담당 부서 건축안전과	담당 자	과장 오진수, 사무관 강나루, 주무관 인병연 ☎ (044) 201-4988, 4992	
보 도 일 시	2021년 9월 1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16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‘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’ 확대… 화재안전 성능 높인다

- 내화구조 · 마감재료 · 방화문 및 자동방화 차단막 기준 통합 정비하여 「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」 제정안 행정예고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-유통-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“품질인정제도”를 금년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고,
 -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*하여 「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」 제정안을 행정예고('21.9.17~'21.10.6)한다.
 - * 「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」, 「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」, 「방화문 및 자동방화 차단막의 인정 및 관리기준」 등 폐합



-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화재안전 성능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재 공학 전문가, 건축자재 제조업 대표 협회·단체 등과 자문단을 구성·운영('19년~)하여 품질인정제도 등 제도개선안을

발굴하였으며,

- 작년 이천 화재사고('20.4)를 계기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발표한 「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('20.6)」과 건축법 개정('20.12)을 통해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을 추진하였다.

* 「건축법 시행령」, 「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입법예고('21.6.25~'21.8.4)

□ “품질인정제도”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,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·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·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,

- 내화구조 대상으로 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, 자동방화 차단막, 내화채움구조, 복합자재(샌드위치패널)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하여 확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.

* 내화구조('99년~) → 방화문·자동방화 차단막('21.8.7) → 내화채움구조·복합자재('21.12.23) → 단열재 등 그밖에 건축자재 ('22년 이후)

<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 종류별 제도개선 방향 >

	내화구조	방화구획 구성 건축자재				건축물 마감재료	
		방화담퍼	방화문	방화 차단막	내화채움 구조	샌드위치 패널	단열재
예시							
							
제도 개선	인정제도 ('99년~)	기준개선 ('19.8.6) - 성능기준 신설	품질인정제도 도입 ('21.8.7)	품질인정제도 도입 ('21.12.23)	품질인정제도 도입 ('21.12.23)	기준개선 ('21.12.23) - 시험방법 개선	
법적 근거	내화구조 고시	방화문·자동방화 차단막 고시			내화구조 고시	마감재료 고시	
⇒ 「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」('21.12.23~)							

- 국토부는 이번 「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」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

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.

□ 「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(제조현장 관리강화)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 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.

○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,

- 건축안전 모니터링('14~)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,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·시공되고 있었다.

*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률(%)

: ('14) 89.8% → ('15) 30.3% → ('16) 37.1% → ('17) 45.6% → ('18) 33.2% → ('19) 18.0% → ('20) 31.6%

○ 특히 이전과는 다르게 사각지대인 중·소규모의 취약한 건축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시행한 6차 건축안전모니터링('20.7~'21.7) 결과,

- 5차 모니터링('19.6~'20.5)보다 부적합률* (18%→31.6%)이 증가하여 보다 촘촘한 제조·유통·건축공사현장의 관리·감독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.

* 시공불량, 미시공, 화재성능 미달, 단열재 정보 미표기, 품질관리서 미제출 등

○ 이에 국토부는 제조·유통 체계를 개선함으로써, 고품질의 자재로 성능시험 후 제조 과정 상 품질 관리의 부실로 인해 성능 미달 자재를 생산·유통하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.

- 제조현장의 점검은 원재료 추적 관리, 제조공정 관리,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여부 등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할 예정이며, 인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.

② (성능시험 관리강화)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을

강화하고,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·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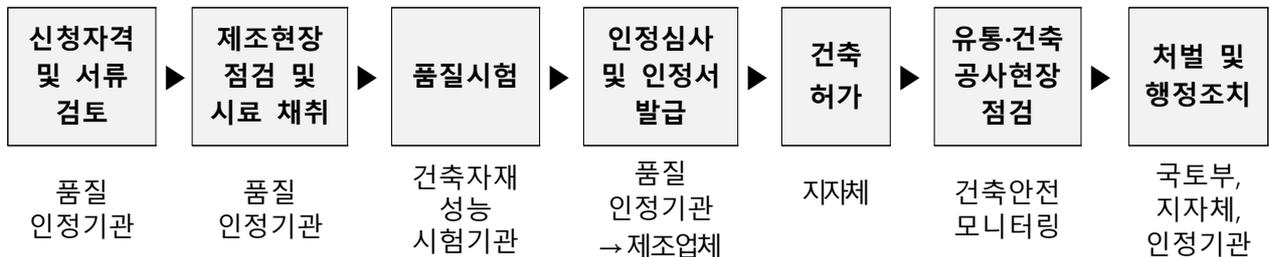
-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접 제작한 시험용 샘플을 시험기관에 제출하여 성능을 검증하였고,
 - 이에 따라 시험받은 자재와 생산하는 자재의 동일성 검증 및 건축 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이 어려웠다.
- 앞으로는 품질인정기관(한국건설기술연구원)을 통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을 검증하고,
 - 매년 인정자재 등의 성능 시험(시험기관)에 대한 점검도 실시함으로써 실제 생산되는 자재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.

③ (유통체계 관리강화)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,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·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.

- 지금까지 모니터링 등에서 불량 자재 및 불량 시공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명령,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으나,
 - 시공 현장 중심의 소규모 표본 점검으로서 불량 자재 자체에 대한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.
- 앞으로는 현장 중심의 점검과 품질인정제도를 연계하여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적발된 제조업체에 대하여
 - 제조현장 개선명령, 인정 일시정지,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재의 생산·유통 과정을 관리하고, 형사고발도 병행하여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한다.
- 또한, 위반행위로 인정이 취소된 제품 또는 품목은 제조현장의 품질 관리 등 재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인정신청을

제한함으로써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.

- 이번 「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」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(20일간)이고, 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.
- 현행 「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」, 「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」, 「방화문 및 자동방화 차단막의 인정 및 관리기준」 등을 통해 각 자재별로 규정된 성능 및 시험방법 등은
 - 시행일 이후부터는 「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기존에 있던 국토교통부 고시는 폐지된다.
-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,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(한국건설기술연구원) 누리집*를 통해 인정 신청을 하고,
 - *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누리집 <https://www.kict.re.kr/menu.es?mid=a10403020000>
 -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, 품질시험,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.
- 공사감리자·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·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

-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“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

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-유통-시공·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·감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”된다면서,

○ “화재 발생 시 불량 건축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인명·재산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, 안심하고 거주·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(전화번호: 044-201-4988, 4992 팩스: 044-201-5575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강나루 사무관(☎ 044-201-498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건축자재등 품질인증제도 인포그래픽

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 도입

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



앞으로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는 모두 품질인정을 받아야 합니다



품질인정제도란?

자재의 성능 및 공장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, 건축현장에서는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을 시공하여야 합니다.

- 시험성적서 위변조 X
- 불변 성능 미달 자재 유통 X
- 불량시공 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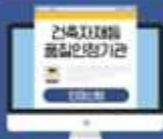


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란?

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일정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자재를 의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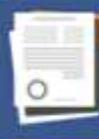
- 내화구조, 내화재료구조, 방화문, 자동방화셔터, 배관차단

누가, 어디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?



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자가 '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'에 인정신청

신청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

- 설계도서 및 구성재료 설명서
- 시방서 및 현장관리사항
- 제조 및 검사설비 목록 및 관리절차 등

어떤 것을 점검 받나요?

품질인정기관의 체크리스트!

제조현장	제품이 원재료-제조-출하 단계별 추적관리 가능 여부 신청 내용대로 제품 생산하는지 확인 제조 및 검사 설비 유지관리 여부 인정제품 관리를 위한 출하 및 판매실적 관리 가능 여부
건축공사장	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건축공사장에 시공되는지 여부

부적합 자재가 적발되었을때 처벌은?



공사중단, 영업정지 등 시정조치



3년 이하 징역, 5억원 이하 벌금



인정취소

*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인정신청을 거부당하게 됩니다.